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69
----------	------

제출연월일 :

제출자 : 하남시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관리·운영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보건복지부 지침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32P ~ 37P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7조(의회 동의 등)
-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 추진 필요성

-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중심의 돌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이용아동 관리

-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급·간식 제공, 등록 및 출결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프로그램 운영

- 기본서비스 : 출결 확인, 급·간식지원 등
- 공통프로그램 : 놀이, 휴식, 신체 활동, 숙제 지도, 아동 지원 등
- 특별활동프로그램 : 언어활동,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및 공개모집에 의한 종사자 채용, 종사자 복무규정 마련, 종사자 교육 안내
- 위생·안전 관리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급식 관리, 위생관리, 안전교육,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수립, 시설 안전 점검, 보험 가입
- 시설운영 관리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운영규정 수립, 각종 사업계획 수립
-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관련 서식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관리

4. 위탁시설 개요

- 개요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면적	정원	종사자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가칭)	대청로 116번길 21 (주님의 교회 1층)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274,32㎡	31명	4명

5. 위탁기간 : 2025. 11. 1. ~ 2030. 10. 31. (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 :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위원구성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 선정방식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평가항목

구분	총점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영역	100	운영체의 공신력(27)	시설장의 전문성(13)	운영계획 (40)	운영의지 (10)	지역발전 기여도 (10)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가칭)

○ 예산지원 : 124,691천원 [균 75,510천원, 도 23,256천원, 시 25,925천원]

(기준: 2025년)

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계	124,691천원	
설치비 지원	75,000천원	· 75,000천원*1식=75,000천원
기자재비 지원	30,000천원	· 30,000천원*1식=30,000천원
운영비 지원	4,000천원	· 운영비 : 2,000천원*2개월=4,000천원
인건비 지원	14,020천원	· 시설장 : 3,245천원*1명*2개월=6,490천원 · 전일제 돌봄교사 : 3,012천원*1명*2개월=6,024천원 · 시간제 돌봄교사 : 1,506천원*1명*1개월=1,506천원
프로그램비 지원	200천원	· 프로그램비 : 200천원*1월=200천원
돌봄인력 지원	1,471천원	· 급여 : 1,226천원*1명*1개월=1,226천원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 1,226천원*0.2=245천원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
- 수탁자 선정방식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함.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기준 등)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지정위탁이 가능함.

- 다만,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의 수탁자격이 있어야 하며, 사무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설치장소 소유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해당 장소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것을 협약함.
-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지정위탁 추진함이 적정함.
-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분석 결과 공공성(2)에 비해 효율성(5)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하기에 위탁 추진함.

분석기준		분석내용	결과	비고
공공성	㉠ 서비스 중요성	·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높음	·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경감
	㉡ 서비스 수혜대상	·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	낮음	· 센터 인근 주민 등 한정적 주민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보통	· 위탁기간 5년으로 재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 가능
	㉣ 서비스 중단 파급효과	·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높음	·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큼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 관련 자격증 소지한 초등돌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 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 후원금 등 기타 세입 충당을 통해 시 예산 절감 가능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높음	· 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 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높음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통해 수준 높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리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높음	· 사업비 정산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참고

관련 법령 및 조례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2020.1.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3>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2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3>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6.3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 지침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34P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지정위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①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이 있어야 함
- ②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6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7조(의회 동의 등)

-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5.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3.5.1.>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3.5.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3.5.1.>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

7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삭제<2019.9.3.>
 5. 다함께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⑦ 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